

#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## I

##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



### 제도의 의의

#### □ 개념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**5년간의 연동화 계획**

#### □ 제도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경제·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  -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**예측가능성**을 제고
  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**전략적 자원배분** 기능을 강화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**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**을 확보
  -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**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**

## ② 근거규정 및 연혁

### □ 근거규정

#### <지방재정법>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⑥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6조(예산의 편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·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#### <지방재정법시행령>

제39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)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### □ 연 혁

- ('88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(지방재정법)
- ('93년)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- ('95년)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'05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(11월)
- ('07년)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

### ③ 수립체계

#### □ 수립 주체

-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
- 안전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

#### □ 주요 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#### □ 수립 절차

①	안전행정부	▪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시달
②	지방자치단체	▪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
③	지방자치단체	▪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
④	지방자치단체	▪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▪ 지방의회 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
⑤	안전행정부	▪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
⑥	안전행정부	▪ 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

## □ 수립 과정에의 외부 참여 제도 활용 권고

### ① 【외부 의견수렴】

-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
  -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(11.9.9)되고 있으므로, 설명회·공청회·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

### ② 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】
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
  - (구성) 위원의 1/2 이상을 지방의원·시민단체·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

### ③ 【지방의회 보고】

-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(지방재정법 제33조①, 동법시행령 제45조)
  -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 보고
-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,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
  - 향후 재정운용 목표, 자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

## ① 기본방향

-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
    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    -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
  - 자치단체 중·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
    -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
  -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
    -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
  - 주민, 지방의회,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, 국회와 감사원,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- ※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

## 2 대상 및 작성 기준

□ 대 상 : 2013~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
□ 작성기준

- ('13년도)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13년도 최종 예산안 작성
  - \*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(최종예산안 기준)와 의회제출(당초예산 기준)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('14년도 이후) '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
  - 「2012~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, '13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
    - \* 한 분야가 여러 국·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
  -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「2012~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
  - 「2012~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수립 이후 법령 제·개정,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
    - \* 투자계획 조정 시,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

### 3 계획수립 세부사항

#### 1. 중기세입 전망

##### ?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

- (총괄) 「2012~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및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참조
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 $\pm 2\%$ 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    - \* 예)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거래세가 1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, 담배값 인상에 따라 연간 담배소비량 10% 감소 예측 등
- (지방세)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, 제도 변경 요인,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-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세수추계기법 등 활용
  -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, 거시경제지표 전망치, 과거 추이 등을 활용

##### < 최근 세제개편 주요내용 >

-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 연장 ('13.1.1~'13.12.31)
  - 9억원 이하 1주택 : 4%→2%
-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('12.9.24~'12.12.31)
  - 9억이하·1주택 75%(적용세율 1%), 9억초과 또는 다주택 50%(2%), 12억 초과 25%(3%) 각각 감면,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
- '12년 지방세 감면 정비내역(기존감면 115건, 신설 5건)
  - 축소·종료 13건(0.17조원), 연장 101건(2.72조원), 확대 1건(0.14억원), 신설 5건(6억원)
    - ※ LH, 수자원공사,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(100%→75%) 축소 등
-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기한 연장 등
  -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소비세에 부가세(50%)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'12.12.31에서 '15.12.31까지 3년간 연장
-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 완화
  -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·보일러 교체 등 개수시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(85㎡ 이하)을 삭제하고, 가격요건(9억원 이하)만 적용하도록 개선

- (세외수입) 「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, 「세외수입 실무편람」, 「지방세외수입연감」 등 활용
  - 정상적 세외수입의 경우, '13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되,
  -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,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
    - \* 재산매각수입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)
    - \* 순세계잉여금(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)
    - \* 전년도이월금, 민간융자금 회수(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등)  
(국고보조금사용잔액,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등)

### **?의존재원 추계**

- (총괄) 최근 의존재원 확보 실적, 국가경제 전망 및 「2012~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,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고려
- (교부세) 국가경제 전망 및 세입 전망, 감세·감면제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
- (보조금)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「2012~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및 「2013~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(안)」 참조
  -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과다 추계되지 않도록 주의

### **?지방채 발행계획**

- 지방채 증권,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



---

## 2.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

---

### ?중기재정운용 목표

-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
-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, 채무관리 수준, 재정수지 등

### ?자원배분 방향

-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,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  - \* 예) 국토·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, 사회복지·보건분야 확대(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)
-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 및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,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
  - 분야별 목표(5년후 미래상)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
  - \* 예) 산업·중소기업 분야 :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, 외국인 투자 '13년 00만달러 → '17년 00만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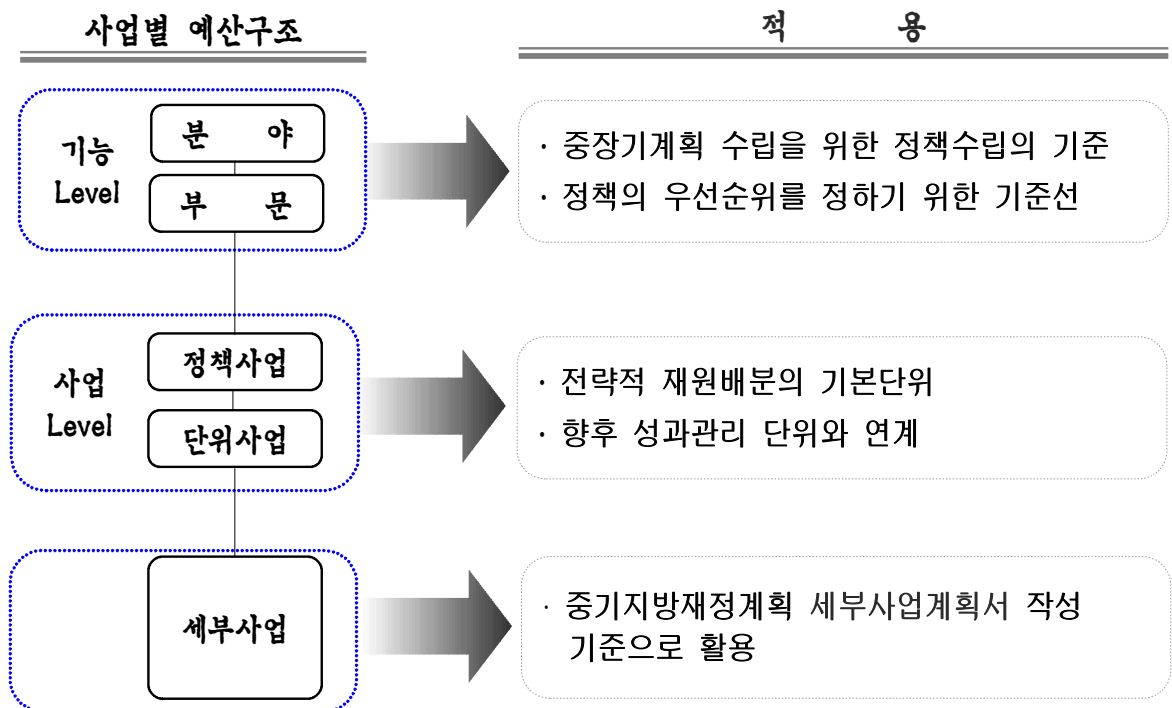
### 3.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

#### ?기본 구성

- 정책방향 : 정책목표(5년 후),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
- 투자계획 : 정책사업 · 단위사업 · 세부사업 단위로 기술

#### ?분야 분류체계

-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
  - 중장기 자원배분(중기재정계획), 단년도 예산편성(기능별 세출예산) 및 통합재정분석(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)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
- 사업예산(사업구조화)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



**참고**    **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**

13개 분야	51개 부문	
<b>010 일반공공행정</b>	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4 재정·금융	013 지방행정·재정지원 016 일반행정
<b>020 공공질서 및 안전</b>	023 경찰	025 재난방재·민방위
<b>050 교육</b>	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·직업교육	052 고등교육
<b>060 문화 및 관광</b>	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	062 관광 064 문화재
<b>070 환경보호</b>	071 상하수도·수질 073 대기 075 해양	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보호일반
<b>080 사회복지</b>	081 기초생활보장 084 보육·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	082 취약계층지원 085 노인·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
<b>090 보건</b>	091 보건의료	093 식품의약안전
<b>100 농림해양수산</b>	101 농업·농촌 103 해양수산·어촌	102 임업·산촌
<b>110 산업·중소기업</b>	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	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·고도화 116 산업·중소기업 일반
<b>120 수송 및 교통</b>	121 도로 124 해운·항만 126 대중교통·물류 등 기타	123 도시철도 125 항공·공항
<b>140 국토 및 지역개발</b>	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	142 지역 및 도시
<b>150 과학기술</b>	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	152 과학기술연구지원
<b>160 예비비</b>	161 예비비	

※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

## ?세부사업계획

### <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>

-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,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
  -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
-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
  - 다만, 아래 표 ‘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’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

#### < 안전행정부 제출 대상 사업 기준 >

- ◇ 광역자치단체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
  - ◇ 기초자치단체
    - ┌ ‘13년 예산 3천억원 이상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
    - └ ‘13년 예산 3천억원 미만 : 총사업비 10억원 이상
  - ◇ 다만, 공연·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, 기초 3억원 이상 (총사업비 기준)
  - ◇ 외국차관 도입 사업,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(시도는 광역, 시군구는 기초)와 공동으로 투·융자하는 사업은 광역 10억, 기초 5억 이상 (총사업비 기준)
- ※ 총사업비 : 기투자 + 5개년계획(‘13~’17) +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(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)

⇒ 우리시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 : 438,858백만원

## <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>

- 세부사업계획은 분야·부문별로 사업예산(보조사업+자체사업)에 대해서 입력하되, 정책사업, 단위사업,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
  -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,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
  -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
  
- 교부세(일반, 특별, 분권)는 자체사업으로 입력
  - 광역은 시도비,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
    - \* 다만, 안전행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교부(시·도분)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재지원하는 경우,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재원사업으로,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재원사업(시·도비 보조사업)으로 설정
  
-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/ 자체사업(시·도비 보조사업 포함)으로 입력, 기초에서는 국고 / 시·도비 / 자체사업으로 입력
  
-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,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
  -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, 임대기간(약정기간)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
    - ※ 정부지급금 = 임대료 + 운영비
      - (임대료)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
      - (운영비)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·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

## 4. 중기 채무 전망

- 지방채 발행, 채무부담행위는 포괄하여 중기채무전망에 반영하고, 단위사업계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

###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일정

안전행정부	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	7월 중
지방자치단체	세부사업조서 입력 *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	8월
지방자치단체	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	9월
	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□ 확정 *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(10.15)	9~10월
	지방의회 보고	11월
안전행정부	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	'13. 12월~
	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	'14. 2월
안전행정부	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	'14. 3월